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94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허성무
이성윤 · 민병덕 · 안도걸
최민희 · 서미화 · 진성준
이광희 · 임오경 · 권향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여건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2조의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읽고”를 “유형·무형의 매체(디지털 매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읽고 듣고”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디지털 문해력 및 비판적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 자료의 품질 관리·저작권 보호·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의 구축 및 접근성 지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u>읽고</u>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1. ----- ----- <u>유형 · 무형의 매체(디지털 매체를 포함한다)</u> 를 통하여 <u>읽고 듣고</u>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디지털 문해력 및 비판적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9. <u>전자 자료의 품질 관리 · 저작권 보호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의 구축 및 접근성 지원 기술의 개발 및 보급</u> 5. (현행 제4호와 같음)
---	---